



재정보증 규정

제정일	1982. 5. 1
개정일	2023. 6. 1
개정차수	8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3. 6. 1)
- 제 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수입,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에게 적용한다. (개정 2017. 4. 1, 2023. 6. 1)
- 제 3조 (재정보증) ①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계관계 직원이 임용된 경우 제2호에 의한 가입을 30일 이내에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본인의 희망으로 재정보증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2.13, 2017. 4. 1, 2023. 6. 1)
1. 재정(인)보증 : 연간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를 납부하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재정보증. 다만, 재정보증서(별지 제1호 서식)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와 재산세 관계 증명원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.
 2. 보증보험 : 일정한 보험금액 이상으로 보험계약 된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
- ②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은 재산세 130,000원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인보증하거나 보증보험금액이 30,000,000원 이상으로 계약된 보증보험으로 하여야 한다. (개정 2008.11. 1, 2023. 6. 1)
- ③ 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. (신설 2023. 6. 1)
- 제 4조 (보상책임 한계) 보증인의 보상책임은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의한 손해에 의해 발생한 회계관계 직원의 금전적 변상책임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며 변상책임의 한계는 민법과 신원보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 (개정 2023. 6. 1)
- 제 5조 (보증의 존속 및 갱신) ① 재정보증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재정(인)보증 : 2년 (개정 2023. 6. 1)
 2. 보증보험 : 1년 (개정 2023. 6. 1)
 - 가. (삭제 2023. 6. 1)
 - 나. (삭제 2023. 6. 1)
- ② 재정보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는 즉시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시에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.
- 제 6조 (재정보증의 자격 및 보증보험의 보험금액) ① 재정보증인의 자격과 보증보험의 보험 금액은 별지 제2호와 같다.
- 제 7조 (보증보험의 일괄 가입) 총장은 재정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괄하여 보증보험을 계약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2.13)
- 제 8조 (재정보증의 2중 보증금지) 재정보증인은 같은 직원의 2중 보증을 할 수 없다.
- 제 9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보증 관계 제 법령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】(개정 2009. 2.13)

재 정 보 증 서

주 소 :
소 속 :
직 위 :
담 당 업 무 :
생 년 월 일 :
주민등록번호 :
성 명 :

상기의 직원이 귀교에 재직 중 직무 수행상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으로 귀교에 손해를 끼쳤거나 그 관장하는 현금, 물품, 기타 재산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대만히 함으로서 망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이기에 이에 보증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연대보증인 주 소 :
성 명 : (인)

연대보증인 주 소 :
성 명 : (인)

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

【별지 제2호】(개정 2014. 3. 1, 2017. 4. 1)

재정보증인자격 및 보증보험금액

1. 시 소재지 이상 재정보증인의 경우

구 분	재 정 보 증 인 의 자 격	보증보험금액
2급(참 여)	재산세 15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18,000,000
3급(부참여)	재산세 15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15,000,000
4급(참 사)	재산세 10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10,000,000
5급(부참사)	재산세 8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7,000,000
6급(주 사)	재산세 7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7,000,000
7급(부주사)	재산세 6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6,000,000
8급(서 기)	재산세 5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5,000,000
9급(부서기)	재산세 5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5,000,000
계약직원	재산세 30,000원 이상(건물 및 토지 합산액)	5,000,000

2. 군 소재지 재정보증인의 경우 : 상기 재산세에서 10,000원을 공제한 금액